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63
----------	------

제출년월일 : 1994.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개정이유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개정되고 동법중 직업안정(국내직업소개사업)업무중 일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빈번한 접촉과 현지성이 요구 되는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등 사무를 시장·군수 및 증평출장 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내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8종)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 직업소개업소의 지도 및 감독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 직업소개소 폐쇄등 조치
- 직업소개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
- 직업안정법 (법률 제4733호, 1994. 1. 7)
- 직업안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노동부령 제94호, 1994. 8. 2)

6. 기타참고자료 : 따로붙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지 역 경제과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나. 직업소개업소의 지도및단속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 신고의 수리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취소및 사업정지 마. 직업소개소 폐쇄등 조치 바.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 직업소개사업의 보고및 검사 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안정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제29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9조 	시장·군수 ·출장소장